

문해력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강원일보 오피니언

요즘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글을 잘 안 읽고, 못 읽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단어 뜻풀이하느라 정작 중요한 내용을 잘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취약한 문해력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시험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하위권 비율이 2000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어나(2000년 5.7% → 2018년 15.1%)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험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거뒀다고 한다. 비판적 사고력도 취약하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문맹률이 매우 낮는데 웬 문해력 타령이나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문해력에 대한 오해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문해력(literacy)을 ‘읽고 쓰는 능력’이자 ‘특정 영역의 전문성 또는 지식’으로 정의한다.

단순히 글자를 판독하는 능력을 넘어, 글 속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전문성을 키워 가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문해력의 차이는 사회생활에서 승진이나 보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습득하거나 정보의 가치를 분석하는 고차원적 사고활동은 결국 문해력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정치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문해력이다. 따라서 ‘문해력 격차’는 학력과 소득 격차를 야기하는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현상이다.

문해력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분포된 학교의 가장 큰 고민이 문해력이다. 소득 양극화, 다문화 가정 증가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에게 양질의 ‘문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학령기 문해 교육이 과거보다 취약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생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다. 요즘은 특히 몇 초짜리 짧은 영상이 유행하면서 집중력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읽고 쓰고 발표하는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객관식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를 위한 기계적 반복 학습만 계속된다면 문해력과 사고력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해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문해력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공교육 활동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국어 교과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취학 전 가정의 문해 환경부터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에 걸쳐 ‘즐겁게’ 읽고 쓰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즐거 읽고 제대로 읽는 학생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은 드물다는 점에서, 문해력 향상은 가장 효과적인 학력 향상 대책이기도 하다.

모든 아이의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은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삶의 힘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공교육의 근본적 책무다. 인력, 예산, 연구 등 과감한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있겠는가.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길 잃고 실족하고 사라지고… ‘100만 치매 환자’ 모두의 문제다

 동아일보 오피니언

기억을 잃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길을 잃고, 교통사고나 실족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게 치매 환자들이다. 가족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조차 잊게 만드는 치매는 고령층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질환이다.

그런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현재 100만 3,161명에 이른다. 급속한 고령화 흐름 속에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치매 환자 돌봄과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여기 등록된 환자 수는 53만여 명으로, 실제 환자 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지역별, 센터별 격차도 커서 관리자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57명에서 최대 558명까지 벌어져 있다. 센터 4곳 중 1곳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직역별 전문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치매 환자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돌봄의 부담과 책임이 여전히 큰 것도 문제다. 전담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이 있다지만 쉽사리 이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현실적 요인이 적잖다. 일상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실종됐다는 신고만 하루 평균 40건, 연간 1만 4,000건에 이른다.

때로 생업까지 포기해 가며 이들에게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고 보호자가 우울증 환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종종 치매 환자인 80대 노인과 그를 돌보던 아내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진단, 치료비 부담은 줄었다지만 돌봄 지원 시스템은 아직 열악하다. 지역 관리센터 수는 일본의 3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동조절장애로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기피하거나, 받아 놓고 방치하는 요양병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예산의 확충과 함께 치매 환자 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등이 절실하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치매 질환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안내 -
-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 안내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하였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희,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되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 * 일시분리 지도대장, 학부모 확인서, 물품 보관 대장, 휴대전화 사용 요청서 등
-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 10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톱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톱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스톱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톱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10. 19.)

-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시행(「공인중개사법」, 10. 19.)
-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용 (「약사법」, 10. 19.)
-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4년 청년인턴·민간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
-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민간부문 일경험 지원 등 대폭 확대 -
- 우수사례 발굴·공유, 참여자 설문조사,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청년인턴 및 일경험 사업의 내실화에도 만전 -

-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5일(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 참석부처(9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 이번 협의회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24년에는 보다 청년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조실) 매월 1회 정책현장 체험활동 운영
(고용부) 청년인턴 수기공모전 및 정책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국토부) 항공관제 분야 청년인턴 운영
(산업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청년인턴TF 운영
(통계청) 통계분야 전문 멘토링 교육 지원

-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단기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의 충분한 일경험과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인턴이 ‘22년 989명에서 올해 6,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 6개월 초과시점부터의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6개월 이상 채용실적 평가항목 신설 및 정성평가 추가
-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턴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상위 20% S등급 부여),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 경제부총리 포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상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도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KOICA 해외봉사단·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이후에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 채용 역량 강화 등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 아울러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민간 일경험 지원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4만 8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일경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일경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 ('23년) 1.97만명(기업탐방 1만명, 프로젝트 2천명, 인턴십 7.7천명), 553억원 → ('24년안) 4.8만명(기업탐방 1.5만명, 프로젝트 6천명, 인턴십 1.9만명, ESG지원 8천명), 1,663억원
- 또한, 민간 일경험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내년부터는 지역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민간 주도 확산을 전담하는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6개소)를 두고, 각 권역 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공공부문)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민간부문)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민간부문: 각 부처 민간부문 일경험 지원사업 등
- 정부는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내실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방안

 이 원 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가명정보 결합의 등장과 필요성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 수요 대응 및 문제해결에 AI,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 및 데이터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특히 데이터 수집 방법과 기술 발달은 개인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모바일(mobile)기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통해 신용카드사, 유통사, 병원, 통신사 등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생산 및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음
- 집적된 개인정보는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가치 있는 융복합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음
 - 특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공익 목적의 활용과 함께 민간부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와 데이터 활용 가치는 서로 상충하므로,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인 가명정보로 전환이 필요함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된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 시행 (2020.08.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후 개보위)에선 이러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 및 과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을 처리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여기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이며, 가명정보 처리는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에 대한 제반 행위를 의미함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①가명처리 목적 등 사전준비, ② 위험성 검토, ③ 가명처리 수행, ④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⑤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단계로 진행
 - 이 중 ①가명처리 목적 등 사전준비 과정에서 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그리고 내부 관리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해선 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관리계획의 제도적 보안이 요구됨
 - 이는 가명정보 활용원칙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관리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 규정(분리보관, 안정성 확보 조치 등) 지침과 내부계획관리 계획마련 혹은 개정이 필요함
 - 이후, ② 위험성 검토를 거쳐 ③ 가명처리 수행단계에선 가명정보 활용 목적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실시하며, ④ 적정성 검토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지적된 경우 추가 가명처리 수행이 필요, 마지막으로 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의 분리, 기록 작성/보관 및 공개의 의무를 준수하면 활용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예시) •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세(천원)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전용면적	공급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68-3579	오피스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876-5432	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13	125,000	-	-	100.00	84.00

(소유자명, 연락처)
+Salt값 암호화

삭제 라운딩

(가명처리)

ID	주택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세(천원)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전용면적	공급면적
wd4e85D2C1qe89nwqe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25,000	750	104.00	84.00
r5w1e2SXzi4wd64qwz	오피스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81,250	-	-	56.45	24.32
ghe6W15Z5ax4Qe24jx	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5,000	-	-	100.00	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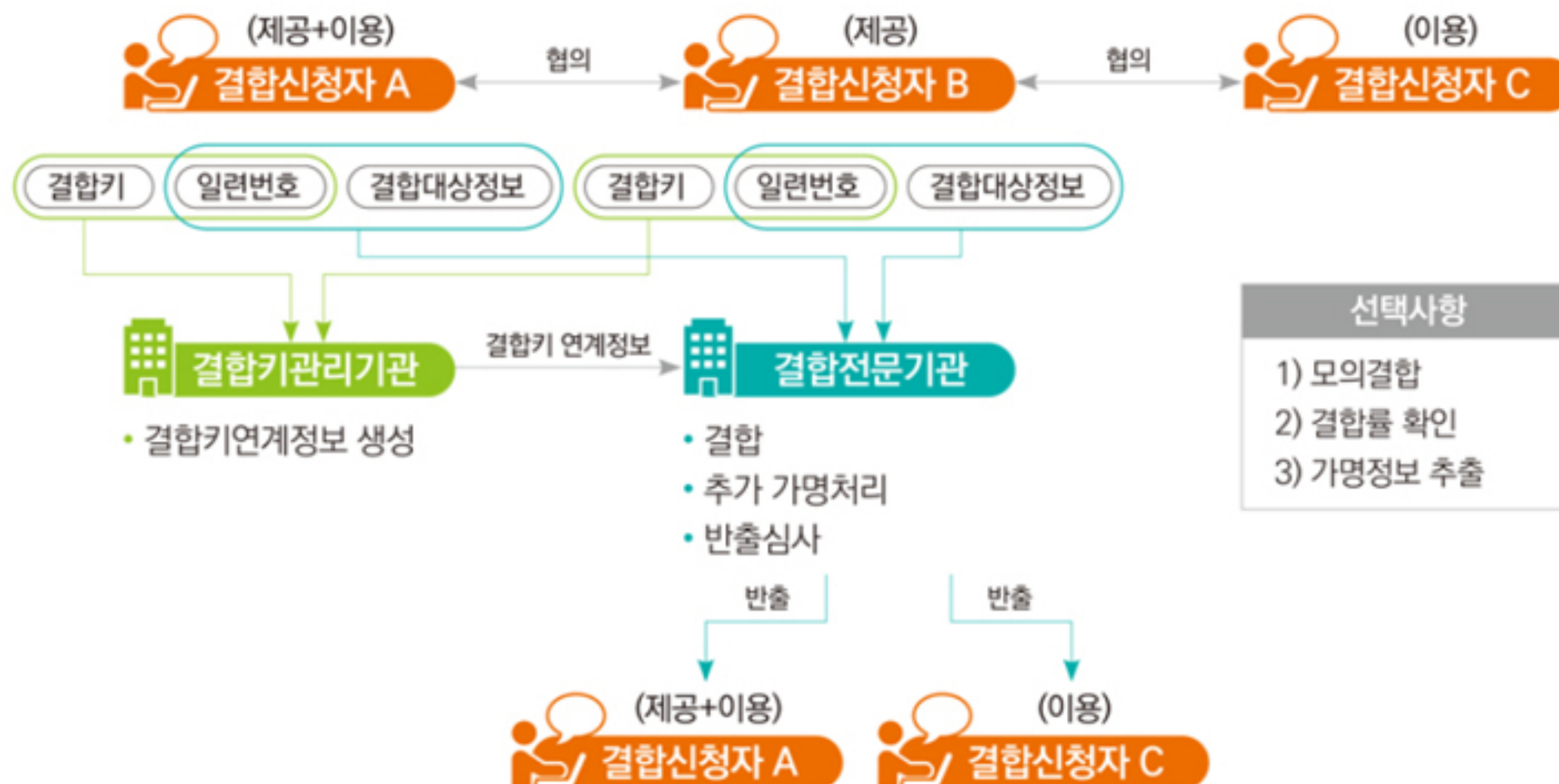
02. 가명정보 결합 주체 및 결합방법

- 가명정보결합은 결합신청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의 각기 다른 역할과 업무내용을 담당
 - 결합신청자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서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과 가명결합에 필요한 공통 결합키 선정 등 결합에 필요한 재반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함
 - 가명정보결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2023년 9월 기준) 23개의 공공(예 : 통계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 지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및 민간기관 (예 : 삼성SDS, LG CNS, CJ, SK 등)이 지정되어 있음
 - 또한, 신용정보법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결합키관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개보위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의미함
- 가명정보 결합은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 ②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
 - 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결합은 사전협의를 통해 결합신청자들이 결합키관리기관(예 : KISA)으로 부터 전달 받은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예 SHA256등)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결합키 대상(예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Salt값, 홍길동 +01012345678+abc123)에 적용하여 작성된 공통 결합키(예 : a9fe0rsr13)와 개별적인 일련번호를 결합대상정보와 결합하는 것으로 시작됨
 - ② 다음으로, 작성된 결합키와 가명처리 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이 전송받아 결합키연계정보를 작성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각 신청자로부터 전달받은 일련번호와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결합키연계정보(결합키와 일련번호)와 상호교차하여 결합함
 - ③ 최종적으로 결합신청자는 결합데이터 반출을 신청하고, 결합전문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합정보를 분석한 결과물 혹은 결합정보를 반출함
 - ④ 반출이후에도 결합데이터를 활용하는 결합신청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됨

• 가명결합 주체별 역할과 결합과정 •



•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 흐름도 •



03.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방안

-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복잡하고 다양한 해결에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작성된 결합데이터가 주요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민간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증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과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23)
 - 하지만 공공 데이터의 전면개방을 위해선 개인정보의 안전한 비식별화 및 익명처리 방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협업이 가능한 기관을 연결해주고,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가명처리 절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2023.01.27 서비스 시작)
 - 또한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에게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등 기술지원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 조성 및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서울, 강원, 부산, 인천)가 운영되고 있음
- 제도적 기반 확보(개보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와 함께 시스템·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기술지원은 가명정보 결합 주체인 결합신청자, 결합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의 역량강화 및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가명정보 결합의 확대는 공공부문의 문제해결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상용화를 독려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한 외지인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토대로, 개보워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올해 연말까지 7개의 시군의 생활인구를 가명 처리된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예 : 통신3사 이동통신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여 실험통계로 공표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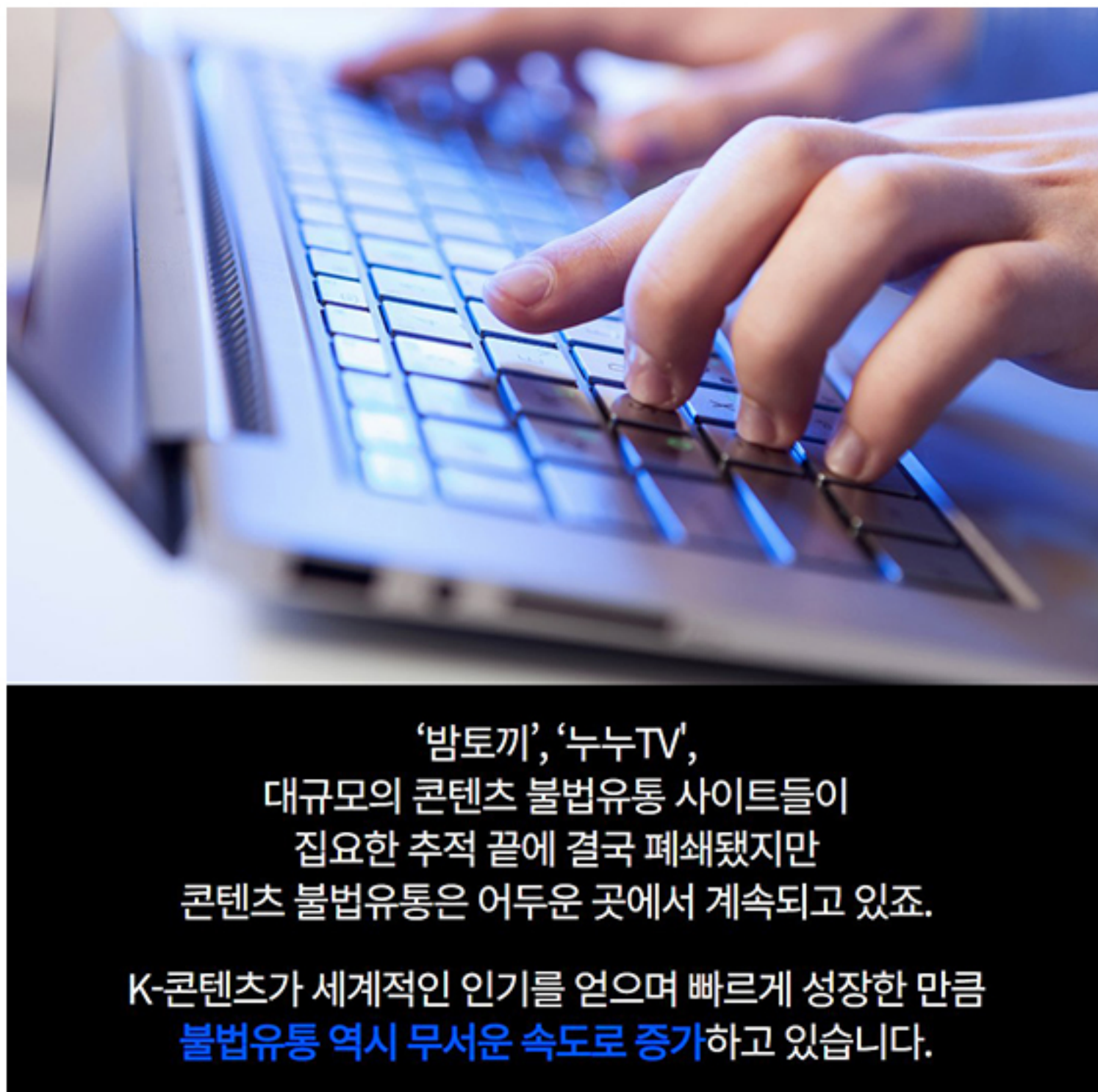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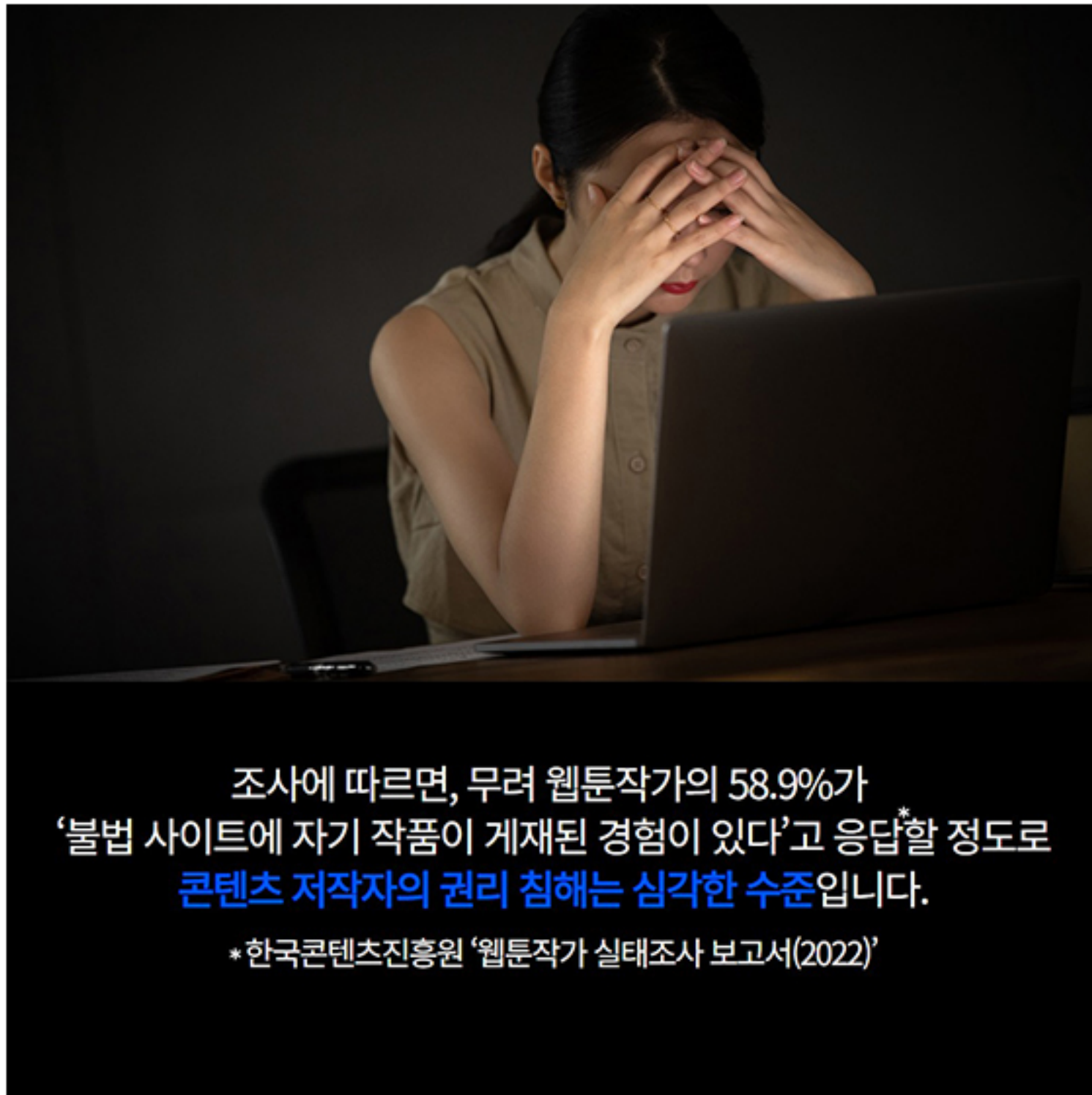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도 근절도 쉽지 않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경찰**’이 지정됐습니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저작권 전문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수사와 검거는 물론
저작권 침해 피해자 상담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침해 쟁점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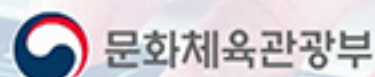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활동해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전화로 연락해
전문적인 수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권	대전광역시 경찰청	042-609-2769
호남권	광주광역시 경찰청	062-609-2968
강원권	강원도 경찰청	033-248-0259
제주권	제주도 경찰청	064-798-3569
수도권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서울)	02-725-1760, 1767, 1768
영남권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부산)	051-507-8702, 8703, 8704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대구)	053-428-9793, 9794

‘저작권 전문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고,
저작권리자 보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기며
불법유통을 뿌리뽑는 데 동참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